

知的所有權 保護의 國際動向과 우리의 政策課題

I. 머리말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先進國間의 對立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最近 國內外 狀況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知的所有權에 對한 政策 方向을 再定立해야 할 時點에 와 있다.

本稿에서는 知的所有權 保護를 爲한 國際動向을 간략히 考察하고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研究課題 내지 政策課題를 提示하는데 目的이 있다.

II. 知的所有權保護에 對한 認識의 提高

최근 知的所有權 保護에 對한 問題가 國內의 問題로서 또는 國際的인 問題로서 중요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國內의 으로는 우리의 產業과 技術의 發展 및 이에 따른 對外貿易規模의 擴大로 우리의 經濟生活에 있어서 積極的인 면에서는 知的所有權 保護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다른 측면에서는 他人의 知的所有權과 충돌을 避해야 할 不可避性이 增大되고 있다.

과거에 비교적 값이싼 勞動集約의인 商品을 生產販賣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知的所有權과 관계없는 品目이거나 그 保護期間이 끝난商品들이었다. 그리고 世界市場에서 市場規模와 支配力이 극히 미미하였을 시는 우리商品이 外國의 特許나 商標등 知的所有權과 다소 충돌이 되더라도 크게 問題를 삼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 한편 對外의 으로 볼 때 우리 輸出은 後發開途國들의 추격으로 勞動集約의인 商品의 價格競爭에 있어서는 競爭力과 市場占有 rate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高附加價值의 技術集約의인 商品을 開發하여 輸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는 살아있는 特許權,有名商標와의 摩擦을 초래할 可能性이 커가고 있다. 또한 國內外의 으로 競爭에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技術

을 開發하고 또한 이를 特許나 實用新案 또는 意匠으로 登錄하여相當한期間 獨占權을 부여 받아同一技術에 對한 模倣과 競爭을 排除하여야 한다. 이렇게 開發된 技術을 財產權化하여 技術開發에 對한 投資와 새로운商品의 企業化를 위한 冒險의in 投資의 資本을 回收하지 않으면 계속 企業으로 發展할 수 없다.

企業은 自己商品에 對한 구준한 技術의 發展, 品質의 改善, 아프터서비스 向上등으로 自己商標에 對한 消費者의 信用을 쌓음으로서 계속 企業으로서의 市場을 構築하게 되고 商標만의 輸出(使用權設定)이 可能하게 되어 企業의 중요所得源이 되는 資產이 된다.

한편 우리의 가장크고 重要한 貿易相對國인 美國의 경우 傳統의in 製造業은相當한部門에 있어 國際競爭力を喪失해 가고 있어서 農產物, 尖端技術產業, 서비스產業, 知的所有權部門등 競爭力이 優位에 있는部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包含 그들의 主要 貿易相對國에 對해 強力한 市場開放을 要求하고 있다.

美國의 龐大한 市場力이 美國市場을 노리는 世界各國企業의 經濟規模을 유지케 하는 原動力이 되어 있다. 따라서 美國의 要청은 市場이란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으로相當한 說得力を 발휘하게 된다.

知的所有權은 文化暢達을 위한 著作權이나 產業發展을 위한 工業所有權이나 할것없이 個人 또는 企業의 財產權으로서의 價值와 그 比重이 점차 增大되고 있는 것은 分明한事實이다. 知的所有權의 保護는 西洋에 있어서는 200年以上的傳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財產權보다 가장먼저 國際的인 保護裝置가 發展되어 왔다. 앞으로도 國際的인 保護制度의 發展이 계속追求될 展望이다.

先進國으로 가는 여러가지 條件中에서 知的所有權 保護의 發展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며, 이 分野에 對한



朴 弘 植

〈特許廳 次長〉

■ 目 次 ■

I. 머리말

II. 知的所有權保護에 대한 認識의 提高

III. 知的所有權保護을 위한 最近의 國際動向

IV. 우리의 政策課題

V. 맷는 말

<이 번號에 全載>

學問的研究는 知的所有權發展을 위한 수 많은 政策課題를 푸는데 큰 뒷받침이 될것이며 이를통한 우리나라의 文化및 產業發展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發足한 知的所有權學會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

III. 知的所有權 保護를 爲한 最近의 國際動向

1) 國際保護 強化의 促進

오늘날 國際間의 資本의 移動 (從前에 資本移動은 先進國에서 開途國에로의 一方통행이었으나 최근에는 逆流現狀도 일어나고 있다) 技術移轉, 商品 및 サービス 交易등으로 國際間의 經濟交流가 擴大되고 있고, 특히 交通및 情報通信技術의 발달로 技術開發에 관한 產業情報 내지는 創作物이 신속하게 外國에 傳達되며, 開途國의 經濟力와 技術의 向上으로 模倣의 程度가 깊고 빠르게 이루어 진다. 오늘날 國際間의 經濟交流에 있어 知的所有權이 附隨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技術移轉은 물론 投資에 있어서도 技術, Know How, 商標등이 수반되며, 高度의 技術商品의 交易에는 特許技術이 包含되어 있는 것이 事例로 되어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知的所有權의 保護對象, 方法 및 程度의 差異로 어떤 나라에서 保護되는 權利가 어떤 나라에선 保護되지 않는다면 그런 나라들間에 經濟交流에 障碍를 招來한다는 것은 당연한 論理이다.

이같은 經濟的인 狀況이 最近에 있어 國際間의 知的所有權 保護의 強化를 위한 움직임을 促進시키고 있다.

2) 파리 協約의 苦腦

—파리 協約의 改正과 特許法 調和를 위한 條約의 推進—

(1) 파리 協約改正의 難航

파리 協約은 모든 產業分野에 있어서 知的所有權을 包括하고 있기 때문에 文字 그대로 工業所有權 保護의 大憲章이라 할수 있다. 파리 協約은 各同盟國이 준수하여야 할 몇 가지 原則 (內國民 待遇의 原則, 優先權制度의 認定等)을 定해 놓고 있는바, 이들 條項은 工業所有權의 國際的 保護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條項이다. 그러나 同盟各國이 준수할 範圍는 制限되어 있으며相當한 範圍의 自由가 各國의 利益이나 選好에 따라 立法할수 있도록 주어져 있다.

예컨대 同盟各國은

① 特許要件 判斷基準設定에 완전한 自由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種類의 物質이나 物件을 特許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다.

② 工業所有權 許容에 있어 審查基準을 定해놓고 事前審查를 하든(審查主義) 하지 않든(無審查主義) 自由이다.

③ 先出願者에게 特許를 해주든지 先發明者에게 特許를 해주든지도 自由이다.

④ 工業所有權의 期間의 長短도 자유롭게 定할수 있다.

⑤ 商標登録의 要件으로 先使用 또는 先登録 어느것으로 定하드라도 無妨하다.

⑥ 기타 出願・登録・審判등에 관한 節次 및 行政事項등은 各國에 一任되어 있다.

이와같은 融通性은 물론 많은 國家들을 同盟으로 끌어들이는데 공헌을 한것이지만 工業所有權制度의 調和와 保護增進이란 본래의 條約의 目的과는 거리가相當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緊張적인 發展을 目標로 同條約은 끊임없는 改正을前提로 하고 있다.

1883年 파리 協約이 締結된 以後 6차례에 걸쳐 修正이 있었다. (①1900年 브뤼셀에서 ② 1911年 워싱턴에

서 ③ 1925年 해이 그에서 ④ 1934年 룬돈에서 ⑤ 1958年 리스본에서 ⑥ 1967年 스톡홀름에서) 그리고 1980年 7차 개정안이 외교 회의에 제출되어 아직 희생 문제로 남아 있다. 파리 협약이 1883年 최초로 성립할 때 11개국이 서명하였고, 그 후 서명국은 매년 증가하여 97개국이 되었으며 개途국이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다.

개途국의 발언권이 증대됨에 따라 개途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 보고서가 1974년 UN 전문 기관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보고서는 특허는 선진국 국민에 의해 독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途국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한 특허의 90% 이상이 생산에는 활용되지 않고 제품으로서 수입되고 있는데 불과함으로 특허 제도는 개발途上국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중심의 현행 특허 제도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是正을 要求하고 나선 것이 파리 협약 7차 개정의 주제이다. 개발途上국 구룹은 현재의 특허 제도는 개인의 권리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 하여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고, 개인의 권리의 의무를 수반할 것(不實施 制裁規定 強化: 수입은 實施에서 제외, 強制実施権 발동을 為한 요건으로서 不實施期間의 단축, 排他的 強制実施権 設定許容)과 개발途上국에 대해서는 特惠待遇를 부여할 것(料金의 減免, 優先權期間의 延長 技術援助規定 채택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파리 협약 개정안은 그간 7차에 걸친 외교 회의를 거듭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途上국 간에 심한 의견 차이로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파리 협약 개정안과는 반대로 知的所有權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파리 협약 개정안은 가까운 將來에 타결될 展望은 희박하다.

(2) 특허법 調和를 위한 條約의 推進

세계 각국의 특허법 상 차이점을 해消하고 調和를 도모하기 위한 條約를 제작하는 전문가 회의가 WIPO 주최로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올해 회의의 공식 명칭은 『發明保護를 위한 법의 어떤 조항의 調和를 위한 WIPO 전문가 위원회: 2차 회의』(WIPO Committee of Experts on the Harmonization of Certain Provisions in Laws for the Protection of Inventions: Second Session)

파리 협약 개정안의 교착 상태를 意識한 탓인지迂回의 表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세계 특허법 통일을 위한 條約를 제작하는 전문가 회의다.

비록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각국 특허법의

내용이지만 調和를 위한 論의 대상이 重要하고 각국 간의 심한 差異點이 있는 조항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全體적으로 調和를 追求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 회의가 개途국의 입장을 反映한 公益을 위한 特許權의 制限에 主眼점이 있다면 금번 統一條約를 成立하는 發明保護를 위한 特許法의 條文들에 調和를 通하여 特許權取得의 便宜와 權利保護의 強化를 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허법 統一을 위한 새로운 條約은 現在의 파리 협약 19條에 포함된 特別協定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同條約이 파리 협약에 規定하지 않은 것을 規定하는 경우에도 파리 협약의 同盟國 국민의 權限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WIPO設立 目的 수행을 위한 우선적인 任務의 하나가 知的所有權의 效率의 保護를 促進하기 위해 이 分野에 있어서 각국의 國內法의 調和를 기하는 方案을 發展시키는 것이며 (WIPO設立 條約 제4조 i호) 또한 知的所有權의 保護增進을 위한 國際協約締結을 促進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조 제iv호)

세계 특허법의 調和를 위한 WIPO의 노력은 그 設立目的에 따른 任務를遂行하는 것이고 또한 知的所有權 保護強化가 모든 선진국이 바라는 바다.

그러나 개途국 중심의 파리 협약 개정안이 現在 교착 상태에 있는 狀況에서 선진국 중심의 特허법 統一條約가 앞으로의 외교 회의에서 겪을 難航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同條約에 對한 具體적인 論의 할 機会가 따로 있을 줄 아나 우선 調和 대상으로 설정한 項目만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二次 회의에서 討議를 거친 것으로서는

- ① 請求範圍의 記載方式
- ② 發明의 單一性
- ③ 製法特許의 保護擴大
- ④ 出願의 先行技術로서의 效力
- ⑤ 發明의 新規性 摶制(Grace period)
- ⑥ 出願日 賦與要件
- ⑦ 發明者 指定 記載要件 등이며

앞으로 전문가 회의(86年 11月 1차, 87年 2차 회의)에서 討議될 事項으로 定한 것은

- ①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② 特許請求範圍의 解釋
- ③ 特許權의 存續期間
- ④ 先願主義과 先發明主義
- ⑤ 特許權의 内容 등이다.

지금까지의 전문가 회의에서는 形式的要件과 特許性

에 관한 技術的 問題가 검토되었으나 앞으로는 特許의 對象 및 特許權의 權利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파리協約 改正 問題와 관련 特許法 調和를 위한 會議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先發開途國으로서 어떤 立場에서 對處해 나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政策判斷이 必要하다.

3) 美國의 知的所有權 保護動向

美國은 傳統의 知的所有權 保護法인 特許法, 商標法, 著作權法外 通商對 關聯 지난 수년간 一連의立法措置를 취하고 또한 今年 4月에 知的所有權 保護 強化法案을 國會에 제출中에 있다.

知的所有權의 不充分한 保護가 自由公正貿易에 重大한 障碍要因으로 보고 장애제거를 위한 모든 조치를 強力히 推進하고 있다.

商標偽造防止法(1984), 84通商關稅法 301條, 國際貿易投資法, 高度技術商標法, GSP延長法, 美關稅法 第337條등에서 外國에서의 知的所有權 保護를 強調하고 이에대한 效果의in 對應措置를 강구할 수 있는 法的根據를 마련하고 있다.

美國 行政府는 外國에서의 知的所有權 保護實態를 調查하기 위한 特別調查班을 설치하였고 이 調查班의 報告書를 土臺로 지난 4月 特別聲明을 발표하였다. 이 声明書는 美行政부의 知的所有權 保護에 對한 단호한 決意를 表明하고 있다.

美國의 政治 및 經濟의in 位置를 감안해 볼때 앞으로의 파리協約 改正會議, 特許法 調和에 관한 會議, GATT의 New Round등 多者間會議에서 뿐만 아니라 兩國間 貿易協商에 있어서도 知的所有權 保護 強化의 波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지난 4月 3日 美國政府가 발표한 『美國民의 海外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特別聲明』의 要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要點>

海外에서 知的所有權에 對한 잘못된 認識과 부적절한 保護로 因한 侵害行爲는 世界貿易과 技術開發에 심각한 障碍要因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是正하기 위해 美國은 國內 또는 國際의으로 (多者間 및 兩者間) 모든 措置를 講求할 것이라고 친명하고 있음.

<海外에서 知的所有權 保護의 實態把握>

⑤ 어떤 나라들은 知的所有權을 公共然히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政府政策을 통해 外國技術 및 創作作品의 盜用을 권장하고 있다.

⑥ 어떤 나라들은 製法特許(Process Patent)만 许

容하고 物質自體의 特許(Product Patent)는 許容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化學物質, 醫藥 및 生物工學(Biotechnology)이 保護되지 않고 있다.

⑦ 製法만의 特許는 새로운 物質을 創製하는데 寄與하기는 커녕 기發明된 物質을 만드는데 非能率의in 方法만 研究하도록 장려하는 결과가 된다.

⑧ 많은 나라들이 外國의 著作物은 保護하지도 않고 있고, 著作物의 一部만 保護하고 있어 새로이 發展되고 있는 著作物(例: ッ퓨터 스프트웨어, 通信衛星等)은 保護對象으로 하고있지 않다.

⑨ 知的所有權 侵害防止를 為한 法은 있어도 海賊行為는 盛行하고 있고 政府는 이를 效果的으로 대처할意志가 없다.

⑩ 國際條約上의 知的所有權 保護基準은 너무 弱하게 되어 있다.

• 특히 特許部門에 있어 어떤 部類 예컨대 化學物質, 醫藥, 生物工學等에 있어 全品目에 대해 特許保護를 하지 않더라도 條約에 위배되지 않는다.

• 強制實施權制度로 適切한 補償없이 特許權을 실시하더라도 無妨하다.

• 새로이 出現되는 技術(半導體, ッ퓨터소프트웨어 等) 保護는 包含하고 있지 않다.

• 많은 나라들은 파리協約을 改正 現行보다 오히려 더 保護基準을 弱化시키려 하고 있다.

<保護對象의 知的所有權形態>

特許權, 商標權, 意匠權, 商品의 去來上의 表識(Trade dress) 營業秘決(Trade-secret) 및 新技術出現에 따른 새로운 形態

<美行政부의 推進計劃>

多國間

⑪ GATT의 新多者間 協商에 있어 知的所有權의 不適切한 保護로 因한 貿易沮害防止를 위한 多者間 貿易協定 締結

⑫ 痘疾化 되고있는 偽造問題 解決을 위해 GATT의 偽造防止 規約(Anti-Counterfeiting code)의 採擇 및 WIPO를 通한 既存基準의 強化

⑬ 현행 條約과 協定下의 保護基準의 잠식 反對(筆者註: 파리協約 改正 움직임을 지칭한 듯)

⑭ 多國間 또는 地域特許廳設立 構想에 對한 討議提議

兩國間

⑮ 既存協定 條約上의 義務를 履行토록 최대한 努力, 美國當事者 權利侵害 抗議 提起

⑯ 적절한 保護의 확보를 위해 美國의 貿易 기타 關

係法合의 총동원 活用

◎ 相對國의 效果의in 조치의 發展을 促求시키기 위해 兩者間協商의 적극추진(筆者註: 現在 韓國, 臺灣, 브라질, 인도네시아등 추진중)

◎ 知的所有權의 專門知識 向上을 為한 Seminar, 技術協力 및 訓練의 擴大實施

國內措置

◎ 「1986 知的所有權 保護 向上法」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rovement Act of 1986) 通過努力

4) GATT와 WIPO의 偽造商品에 대한 立場

偽造商品의 交易을 效果의으로 防止하는 조치를 實易을 관장하는 GATT에서 할것인가 知的所有權을 관장하는 WIPO에서 할것인가에 대한 管轄權 논쟁이 있는 가운데 각기 獨自의으로 方案을 강구하고 있다.

GATT에서는 78.7 美國의 發議로 GATT TOKYO Round에서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共同聲明을 발표하고, 84.11 第40次 GATT 總會에서 先進國의 요청에 따라 偽造商品 問題 檢討를 위한 專門家 Group을構成키로 결의했다.

今年 2月 New Round 準備委員會에서도 이 問題에 대한 GATT 및 WIPO의 管轄權 및 New Round 議題 채택에 대한 先進國과 開途國間에 意見對立이 되풀이되었다. 先進國에서는 偽造商品의 交易을 效果의으로 防止하는 것은 自由公正貿易을目標로하는 GATT 精神에 맞는 것이라하고, 開途國에서는 그 같은 偽造商品 交易防止를 위한 새로운 協定은 또다른 貿易障壁을 쌓는 것이고, 知的所有權 문제는 WIPO가 專擔하고 있으므로 偽造商品交易問題도 WIPO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論理이다.

79年 7月 美國과 EC가 協議 GATT 總會에 提出한 偽造商品交易에 관한 國際協定案을 作成한바 있고 앞으로 New Round에서 제기될 條約案도 이와 大同小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WIPO에서도 금년 5月 제네바에서 偽造行爲防止에 관한 專門家會議를 開催 各國法에 具體化하도록 권고한 Model 規定을 검토한바 있다.

GATT에서는 條約締結을 推進하는데 反에 WIPO에서는 各國의 國內法에 이를 反映하도록 勸告案을 作成하는 등 偽造防止에 대한 強度에 差異를 보이고 있다.

IV. 우리의 政策課題

1) 政策方向의 設定

知的所有權의 保護程度과 方法은 各國의 文化과 產

業의 傳統과 水準에 따라 差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世界的인 文化와 經濟의 交流가 擴大됨에 따라 保護가 強化되어가고 水準도 平準化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先發開途國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先進國과 開途國間의 知的所有權 保護에 관한 紛爭에서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가. 多者間 問題에 있어서나 兩國間問題에 있어서나 知的所有權에 관한 政策方向을 分明히 設定해야 할 時點에 와 있다.

模倣을 위한 努力を 언제까지 또 어느정도 默認의 形式으로 間接保護할 것인가, 우리것의 模倣防止를 위한 努力으로 轉換할 것인가?

現在 우리 產業技術의 水準, 앞으로의 10年전후의 展望등이 고려 되어야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通商의 問題를 함께 고려 國益의 次元에서 巨視的으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紙面관계로 여기서 상세히 檢討할 수 있지만 結論만 이야기 한다면 模倣에서創造으로의 깃발을 걸고 知的所有權 保護 強化에로의 隊列에 서야할 때가 오고 있다.

이로서 先進國과 知的所有權 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通商分野에서도 떳떳한 姿勢로 임하여야 할것이며 구차한 模倣의 必要性을 強調하지 않아도 된다.

一部 產業分野에서 苦痛이 따르겠지만 이를 克服하는 知惠의 低力이 있으므로 轉禍爲福의 契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保護對象과 程度

(1) 特許法에서의 先後進國間의 差異는 不特許事項의 有無(化學物質, 醫藥等), 強制實施制度의 有無와 強弱(美國의 경우 Clean Air Act에 依한 特許權의 強制實施制度가 있을뿐 特許法에서는 없음), 特許期間의 長短 및 侵害에 있어서 司法的 救濟의 效率性等에 있다.

(2) 特許는 公開의 代價로 一定期間 獨占權을 賦與 保護하는 것인데 公開되지 않은 知的所有權은 어느정도 어떻게 保護할 것인가. 우리法에서도 民法, 商法, 刑法等에 의해 어느정도 保護가 可能하지만 이에 대한 體系的研究와 政策判斷이 必要하다.

예컨대 營業秘訣(Trade Secret : 化學 Formulas · 製造工程, 技術 Know-How, 生產品目, 價格情報, 去來先등)

(3) 세로히 發展되는 分野 예컨대 Computer software, Mask Work (半導體 칩設計) · 人工衛星 · 生命工學(Biotechnology)등 세로운 科學技術分野에 대한 知的所有權으로서의 保護問題는 中요한 政策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知的所有權(智力財產權)과 工業所有權(工業財產權)으로 分할되는데, 최근 科學의 發達로 現行 特許法으로서는 理論上問題가 있는 科學의 發見(scientific discoveries)에 대한 知的所有權인 科學所有權(scientific property)의 認定問題가 未來의 政策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WIPO設立 條約 第2條에서 知的所有權에는 科學의 發見에 대한 權利가 包含된다고 定義하고 있다. 現在 特許理論과 關係에서 紛糾로운 研究課題가 될 것이다.

(4) 知的所有權 關聯分野

獨占使用을 전제로 하는 知的所有權은 市場經濟에 있어서 競爭의 活性화를 圖謀하는 公正去來法 내지 獨

寡占禁止法과 境界를 接하면서 衝突을 이르킬 수 있다. 이같은 衝突은 知的所有權의 使用形態에서 나타날 수 있는바, 知的所有權의 保護強化와 함께公正去來法과의 關係가 研究檢討되어 必要하다면 法的補完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V. 맷는말

우리의 對外依存의 信命의 經濟構造, 技術開發의 當爲性, 先進國을 向한 國民意識鼓吹의 必要性 등으로 知的所有權保護는 계속 發展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分野에 종사하는 분은 물론 學界에서도 關心을 提高하여 活發한 研究討論이 所望스럽다. <8>

本會主要實行業務

◎ 8月의 메모 ◎

1日	◇特許公報 第1182號 發刊 ◇公開特許公報 第202號發刊 ◇第564回 이週의 優秀發明選定 報道依賴	發刊 ◇特許公報 第1185號 發刊 ◇實用新案公報 第785號 發刊	◇意匠公報 第549號 發刊 ◇實用新案公報 第789號 發刊
4日	◇特許公報 第1183號 發刊	14日	◇第566回 이週의 優秀發明選定 報道依賴 21日
6日	◇商標公報 第306號 發刊	◇實用新案公報 第786號 發刊 ◇意匠公報 第548號 發刊	◇工業所有權 大法院判例集(86—7) 發刊 ◇商標公報 第308號 發刊
7日	◇特許公報 第1184號 發刊	16日	◇特許公報 第1186號 發刊 22日
8日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06號 發刊 ◇第565回 이週의 優秀發明選定 報道依賴	◇實用新案公報 第787號 發刊 ◇公開特許公報 第205號 發刊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09號 發刊	◇아세아자동차 社內研修후원 ◇第567回 이週의 優秀發明選定 報道依賴
9日	◇第30回 發明教室 開催 ◇商標公報 第307號 發刊 ◇KIPA通信 第6號 發刊	18日	◇特許公報 第1187號 發刊 ◇實用新案公報 第788號 發刊 ◇公開特許公報 第206號 發刊
11日	◇公開特許公報 第203號 發刊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07號 發刊 ◇意匠公報 第547號 發刊	19日	◇光通信分野 세미나 및 간담회 開催 20日
13日	◇公開特許公報 第204號 發刊 ◇公開實用新案公報 第108號	◇工業所有權 登錄目錄(86—7) 發刊 ◇特許公報 第1188號 發刊 刊	◇부산(경남)지역 工業所有權研修講座(30일까지) 29일
			◇第568回 이週의 優秀發明選定 報道依賴 30일
			◇特許公報 第1191號 發刊 ◇商標公報 第309號 發刊<8>